

루터대 경건회 및 교회실습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영성 훈련과 학풍 진작을 위한 경건회 및 교회실습의 관장을 목적으로 한다. (2016.4.4.개정)

제2조(업무관장) 경건회와 교회실습의 실천업무는 교목처가 담당하되 모든 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토의, 검토한다. (2004.2.25.개정),(2014.2.25.개정),(2018.8.24.개정)

제 2 장 경건회 활동

제3조(경건회 참석)

1. 학생은 매주 정규 경건회(화, 금요일)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6.4.4.개정)
2. 학생은 매학기 전체 경건회 횟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출석을 할 때 Pass학점을 받으며 모든 학기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다. 단, 신학전공 학생은 전체 경건회에 모두 출석하여야 Pass학점을 받는다. (2014.2.25.개정),(2016.4.4.개정),(2017.01.26.개정),(2020.2.25.개정),(2020.4.29.개정)
3. 대면/비대면 경건회 출석사항은 교목처의 채플 운영계획을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교무위원회에 보고한다. (2014.2.25.개정),(2016.4.4.개정),(2020.8.25.개정)

제4조(경건회 평가 및 징계)

1. 결석자는 1차 경고하며 계속 결석할 경우 결석횟수에 따라 처리하며, 출석률이 3분의 2에 미달할 시, 교목처에서 주관하는 영성 훈련 프로그램과 학생회 및 대학 주관 행사에 참석하거나 교목처에서 적절한 과제를 부과함으로써 초과된 결석 구제를 할 수 있다. (2016.4.4.개정),(2018.8.24.개정)
2. 경건회 학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 수혜 및 생활관 입사를 불허한다.
3. 경건회 학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할 수 없으며, 부족한 학점을 보충한 후 졸업한다.
4. 다음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경건회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 공결 및 병결 신청서 제출자 ㉡ 학생회 및 전공 행사, 대학 행사 참석자 ㉢ 기타 교목처에서 인정한 예외자 (2016.4.4.신설),(2018.8.24.개정),(2020.2.25.개정)
5. 경건회 시간에 배정된 정규수업자의 결석일수는 출석일수로 인정하지 않되, 전공

4-1-6 루터대 경건회 및 교회실습 규정

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교목처에서 출석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2016.4.4.신설),(2018.8.24.개정),(2020.2.25.개정)

6. 경건회 시작 이후에 입실한 자와 축도 전에 퇴장한 자, 예배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는 결석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6.4.4.신설)

제 3 장 신학전공 학생 교회실습

제5조(목적) 학생들의 실제 교회봉사를 통하여 교역자의 지도하에 목회훈련을 쌓으며, 이론과 실재를 경험으로 터득하여 목회자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6조(교회실습 학점) 교회실습은 학부생 전 학년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할 수 없다. 평가방법은 해당교회 목회자의 평가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1. 실습학점은 학기 당 1학점, 학년 당 2학점으로 한다.
2. 재학 중 8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다.
3. 실습학점은 Pass학점이며 실습평가는 실습교회 목사의 평가에 기준한다.
4. 실습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장학금 수혜 및 생활관 입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제7조(실습교육 원칙)

1. 매학기 초에 실습교회를 교목실에 보고한다.
2. 실습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습교회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옮길 때에는 즉시 교목실에 보고해야 한다.
4. 실습보고서는 교목처에서 작성한 소정양식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도목사는 인비로 교목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8.8.24.개정)
5. 1학년은 신학적으로 훈련이 없고 경험도 부족하므로 관찰을 위주로 하되 교회학교 교사나 성가대원으로 경험을 쌓는다.
6. 2학년은 주로 기독교교육 분야에서 실습함으로써 경험을 쌓는다.
7. 3학년은 예배, 전도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실습한다.
8. 4학년은 주로 목회행정에 관한 지도를 받는다.
9. 실습생은 실습교회에서 부덕한 일을 삼가야 한다.
(예: 대우관계로 불평하거나 이성관계로 추문을 남기는 등)
10. 실습생은 실습교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그 교회에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11. 실습생은 실습교회의 문제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